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5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5년 3월 ~ 12월 중 최대 10개월
- 지원규모 : 0개사 (예산 한도내 선정)
-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대상 : (2. 13. 기준) 청년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 분	지 원 요 건
주 소 지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동구
연 령	19세 ~ 39세의 청년 ※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해당
사 업 장	동구에 사업자 등록(3개월 이상~7년 미만)후 현재까지 영업중 ※ 사업자 등록 2018. 2. 14. ~ 2024. 11. 13. 해당
임 차 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지원제외

제 외 대 상 및 업 종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부·지자체·타기관에서 임차료 지원을 받는 경우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붙임1. 참고)**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5. 7. 25.(금) ~ 8. 14.(목)

○ 신청방법

- (방문·우편 접수)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방문 : 평일 09~18시, 공휴일 제외 / 우편 : 8월 14일 소인분까지 유효

- (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 8월 14일 18시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에 한하여 유효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053-261-3358)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 **(붙임2. 목록 참고)**

○ 문 의 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3.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현장실사 ▶ 2차 대면심사

■ (1차 심사) 지원요건 심사

항목별 배점 평가(매출액,임차료,점포규모,창업기간 등)

☞ 모집 규모 초과 시 : 심사표에 따른 점수순으로 1.5배수 1차 선정

■ (현장 실사) 1차 서류심사 결과 선정기업 대상 현장 실사

■ (2차 심사) 심사위원 대면 심사(지원동기,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

☞ 2차 심사결과 고득점 순 최종 선발

○ 세부일정 : 단계별 심사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 최종발표 : '25. 8. 25.(월) 예정

○ 통보방법 : 동구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4.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25. 3. ~ 12. (최대 10개월)

○ 지원한도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최대 5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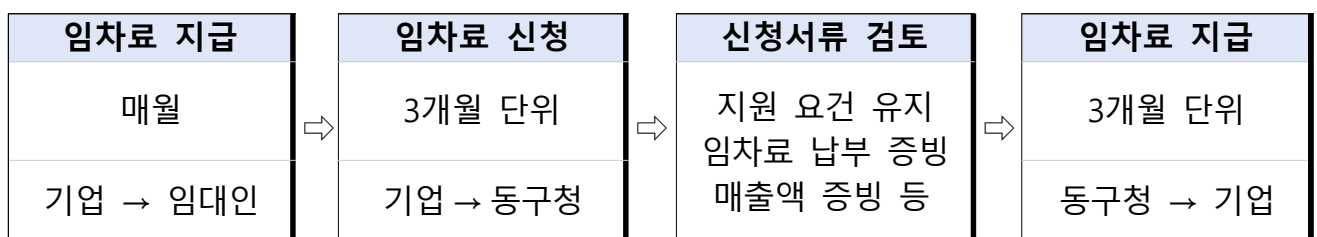
○ 지급방법 : 기업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선 납부한 후 지원금 청구

■ 매월 임차료를 기업이 임대인에게 선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지원금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중 휴업 및 폐업할 경우 영업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지급절차



5. 유의사항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붙임2) 전부를 신청 마감전까지 제출해야 신청완료 인정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락 불가 또는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불가)
- 2차 대면심사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으로,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해당사업 신청 불가
-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의 경우 대구시 동구의 판단에 따름

6. 붙임서류

- (붙임1)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제외 업종
- (붙임2)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
- (붙임3-서식①)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 (붙임3-서식②)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붙임3-서식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